

제 호

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증

1. 설립자

성명: (생년월일:)

주소:

2. 운영자

성명: (생년월일:)

주소:

3. 학원의 명칭:

4. 학원 소재지:

「도로교통법」 제104조제1항에 따라 위 자동차운전학원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시·도경찰청장

직인

(주) 테두리는 이중테두리선으로 하되, 각각 3mm의 금색으로 한다.

210mm×297mm[인쇄용지(특급) 120g/m²]